

## 「2020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표준안 주요 변경사항

### □ 주요 변경사항

#### ○ 2020년 근로계약서(안) 주요 변경사항

2019년 근로계약서	2020년 근로계약서 (안)	수정 취지, 방향
제2조(근로장소와 담당업무) 예술강사는 개인별로 배치 받은 학교에서 _____ 분야 _____ 이론 및 실기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단, 예술강사가 출강하는 학교(근로장소)는 운영기관과 운영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근로장소와 담당업무) 예술강사는 개인별로 배치 받은 학교에서 _____ 분야의 이론 및 실기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단, 예술강사가 출강하는 학교(근로장소)는 운영기관과 운영학교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담당업무 기재란 간소화
제6조(급식비) 운영기관은 예술강사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출강한 달에 한하여 월 7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한다.	<삭제>	- 취업규칙으로 이동

#### ○ 2020년 취업규칙(안) 주요 변경사항

2019년 취업규칙	2020 취업규칙 (안)	수정 취지
제8조(제출서류) ① 모집절차를 거쳐 선발 또는 선발예정인 강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제8조(제출서류) ① 모집절차를 거쳐 선발 또는 선발예정인 강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주소 및 주소 변동(이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	- 운영기관이 필요에 따라 접수 시점과 현 시점의 주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구체화

2019년 취업규칙	2020 취업규칙 (안)	수정 취지
<p>3. 기타 예술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lt;후략&gt;</p>	<p>최전력조회 동의서 3. 기타 예술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lt;후략&gt;</p>	
<p>제14조(겸업의 허용) ① 예술강사는 창작활동, 공연예술활동 등 예술인으로서 본연의 직무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취업 할 수 없다. 다만 예술강사지원사업 출강일과 날짜가 중복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일자리창출사업 2. 사회적 기업 중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에 의하여 고용되는 사업</p>	<p>제14조(겸업의 허용) 예술강사는 출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창작활동, 공연예술활동 등 예술인으로서 본연의 직무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사업 제외에 따라 제2항의 제한을 삭제</li> <li>- 운영기관의 관리 편의를 위해 ‘출강에 지장이 없는’이라는 조건 추가</li> </ul>
<p>&lt;신설&gt;</p>	<p>제21조(출근) 예술강사는 운영학교와 정한 출강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강의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자로서 성실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li> </ul>
<p>제21조(결근) ① 예술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출강일에 출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1주일 전 운영학교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에 출강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결근할 경우에는 수업 시간 시작 전 운영학교와 운영기관에 구두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고,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팩스 또는 이메일에 의함)</p>	<p>제22조(지각 및 결근) ① 예술강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출강 일정에 출근할 수 없는 경우 최소 1주일 전 운영학교에 고지하고 상호 협의하에 출강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② 제1항 소정의 출강일정 조정이 어려운 경우, 예술강사는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지각, 결근에 대한 승인을 얻는 한편 운영학교에 그 사실을 충실히 고지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출강일정 조정을 우선 시도하고, ②출강일정 조정이 어려운 경우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절차를 정립하여 명시</li> <li>- 무단지각 및 결근의 정의 명시</li> <li>- 출강일정 조정의 경우 등은 지각,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음을 명시</li> <li>- 지각, 결근 통합 및 전반적으로 간소화하여 서술</li> </ul>

2019년 취업규칙	2020 취업규칙 (안)	수정 취지
<p>③ 예술강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천재지변 기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인해 출강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운영학교와 협의하여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출강 당일 운영학교의 일방적인 통보로 수업이 취소된 경우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p> <p>제22조(지각) ① 예술강사가 지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정당한 사유 없는 지각의 경우 그 시간에 비례하여 강사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 횡수 등을 참작하여 징계할 수 있다.</p>	<p>③ 예술강사가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단지각·결근으로 본다.</p> <p>④ 제1항에 따른 출강일정 조정이 있는 경우 또는 출강 당일 운영학교의 일방적인 통보로 수업이 취소된 경우는 지각·결근으로 보지 않는다.</p>	
<p>&lt;신설&gt;</p>	<p>제23조(결강 시수의 처리) 결근, 지각 등의 사유로 인한 결강 시수의 경우 출강시수로 처리하지 아니한다.</p>	<p>- 근태관리 실시에 따라 도입된 '결강 시수' 관련 서술 취업규칙 내 추가</p>
<p>제26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운영기관은 예술강사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b>역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3일을 유급휴가로서 부여한다.</b></p> <p>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예술강사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p>	<p>제27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운영기관은 예술강사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b>10일의 휴가</b>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p>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b>에는 그 금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b></p> <p>③ 제1항에 따른 휴가는 <b>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b></p>	<p>-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내용의 수정</p>

2019년 취업규칙	2020 취업규칙 (안)	수정 취지
	면 청구할 수 없다.	
<신설>	<p>제28조(난임치료휴가) ① 운영기관은 예술강사가 인공 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 (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예술강사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p>	- 남녀고용평등법 소정 내용의 추가
<신설>	제34조(급식비) 예술강사의 생활 보조 등을 목적으로 출강결과가 등록·승인된 월에 한하여 월 70,000원의 정액 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2020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타 사업장으로부터 같은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급식비의 지급 목적, 금액, 예외 등 명시
<p>제38조(산정방법)</p> <p>③ 강사의 통상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월의 통상임금: 총 출강시수에 대한 강사비를 총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li> <li>2. 주의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을 4.34주로 나눈 금액</li> <li>3. 일의 통상임금: 주 통상임금을 5일로 나눈 금액</li> </ol>	<p>제40조(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예술강사의 통상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월의 통상임금: 총 출강시수의 대상 임금을 총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li> <li>2. 주의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을 4.34주로 나눈 금액</li> <li>3. 일의 통상임금: 주 통상임금을 5일로 나눈 금액</li> </ol>	-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한 '급식비' 처리의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강사비'라는 구체성 있는 표현을 '임금'으로 수정
<신설>	제53조의2(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한 심의에 관한 특	- '18~19년도 예술강사 제도개선소위원회 합의 사항에

2019년 취업규칙	2020 취업규칙 (안)	수정 취지
	<p>례) 무단결근, 지각 등을 이유로 징계 심의 시 징계의 양정은 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여 한다.</p>	<p>다른 내용 추가 *별표1의 추가 사항은 취업규칙안 참조</p>
<p>제52조(징계의 종류) ① 예술강사에 대한 징계는 해고·정직·감봉·견책·경고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며, 해고된 자는 향후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따른 강사활동에 지원 할 수 없다.</li> <li>2. 정직은 120시수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li> <li>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봉 총액이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li> <li>4. 견책은 비위 사실을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회개의 방법은 윤리교육 등 징계 목적달성에 필요한 방법을 취할 수 있다.</li> <li>5. 경고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한다.</li> </ol> <p>&lt;후략&gt;</p>	<p>제57조(징계의 종류) 예술강사에 대한 징계는 해고·감봉·견책·경고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며, 해고된 자는 향후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따른 강사활동에 지원 할 수 없다.</li> <li>2. 감봉은 1회당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 기준 월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한다.</li> <li>3. 견책은 비위 사실을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회개의 방법은 윤리교육 등 징계 목적달성에 필요한 방법을 취할 수 있다.</li> <li>4. 경고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한다.</li> </ol>	<p>- '18~19년도 예술강사 제도개선소위원회 합의 사항에 따라 '정직'을 삭제</p>
<p>제61조(건강진단) ① 운영기관은 예술강사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p> <p>② 건강진단은 사업 중 수립되는 계획에 따라 1회 이상 실시한다.</p>	<p>제61조(건강진단) ① 운영기관은 예술강사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p> <p>② 예술강사는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p>	<p>- 기존의 확인적 서술 삭제 후 예술강사의 수검 의무 추가</p>

[참고] 취업규칙 별지의 활용

구분	용도	비고
별지1. 출강시수 (소정근로시간) 약정(변경) 통보서	① 학교와 협의하여 최초 출강시수를 정하는 경우 ② 정한 출강시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출강시수 약정 또는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징구
별지2. 직무청렴서약서 별지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근로계약 체결 시 징구
별지4.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임신 중인 예술강사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5. 육아휴직 신청서	강사가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세부 요건은 취업규칙 본문 참조
별지6. 강사활동 중도포기(사직) 신청서	사유를 불문하고 예술강사가 계약기간 만료에 앞서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본 신청서의 수리일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나, 수리일을 강사가 기재한 사직 희망일 보다 앞선 시기로 정할 수 없음
별지7. 해고예고 통보서	강사에게 해고 처분을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한 달 이전에 작성, 통지
별지8.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별지9. 징계사유 설명서 별지10. 징계의결서	인사위원회의 결과로서 징계 의결을 하고(별지9) 이를 강사에게 통보(별지8)하는 경우	
별지11. 금품 지불기일 연장합의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강사에게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간만료, 해고 등 사유를 불문함